

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
(남영숙 의원 외 19명)

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영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.

발 의 자 : 남영숙, 이춘우, 김준열, 신호광,
김득환, 박태춘, 박차양, 이선희,
이종열, 정세현, 박용선, 김상현,
조현일, 박승직, 김영선, 임미애,
박창석, 임무석, 안희영, 이수경
의원 (20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13조 개정(2014.3.18)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촉진을 위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·아동·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을 신설함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·아동·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제2항)
- 나.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제3항)
- 다. 경비 보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해서 규정함(안 제9조제4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련법령 :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 : 의견첨부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첨부
- 해당부서 검토의견 : 의견 없음

6. 참고사항

-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

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”를 “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여성농어업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여성농어업인”이란 으로, “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”을 “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라 함은”을 “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란”으로, “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”을 “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란”으로, “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”을 “법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을 “(기본계획등 수립시행)”을 “(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”을 “법”으로, “여성농어업인 시책 기본계획”을 “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·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

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)”를 “(자문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”를 “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(이하 “자문회의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”를 “자문회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</u>	<u>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----- 뜻 은 -----.
1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라 함은 「여성 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.	1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란 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
2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라 함은 「여 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.	2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란 - 법 ---- ----- -----.
3. 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라 함 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 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 한다.	3. 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란 - 법 ----- ----- --.
제4조(기본계획등 수립시행) ① 도지 사는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 인 시책 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하며,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.	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) ① -- 법 -----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)	제6조(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	② -----

현행	개정안
에 대하여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제9조(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·운영) (생략) <신설> <신설> <신설> 제10조(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)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<u>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</u>를 둔다. ② 제1항의 <u>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</u>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---- 예산의 범위에서 ----- -----. 제9조(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·운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도지사는 <u>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·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</u> ③ 도지사는 <u>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 ④ 제3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 제10조(자문회의) ①----- ----- ----- <u>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(이하 “자문회의”라 한다)</u> ---. ② ----- 자문회의 ----- ----- -----.

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.
2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.
3. 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) ①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·평가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시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.

④ 여성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·공급함으로써 농어업·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,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)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
2.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실태
3.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)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,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
2.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
3. 여성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
4.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
5.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
6.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·영어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
7.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, 상담 등 활동 지원
8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)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여성농어업인의 출산, 질병, 사고 시 도우미 지원
2.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
3.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
4.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
5.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) 도지사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귀농·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
2. 귀농·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, 상담, 화합을 위한 시책 추진
3. 귀농·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어촌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실시
4. 귀농·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
5. 그 밖에 출신 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·모성보호·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·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자문회의)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(이하 “자문회의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의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발췌

□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·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4., 2008.2.29., 2013.3.23.>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3.3.23.>
1.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
 2.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 방향
 3.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
 - 가.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
 - 나.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
 - 다.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 - 라.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
 4.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의 지원계획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,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3.3.23.>
-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·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 및 시·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령·해양수산부령 또는 시·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8.4., 2008.2.29., 2013.3.23.>

[제목개정 2013.3.23.]

제13조(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, 모성 보호,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·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3.18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18.>

[전문개정 2010.3.17.]

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 법제심사 (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)

실·과	주요내용(조항)	검 토 의 건
농업정책과	부칙	<문장 수정 필요> 공포일부터 => 공포한 날부터

2 규제심사 (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)

○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3 부패영향평가 (감사관)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 치 법 규 명	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평 가 담 당	감사관실	직 급 성 명	행정7급 김 덕 환
입 안 주 무 부 서	정책기획관	통 보 (조 치) 일	2018. 11. 16.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	조 치 사 항
	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.		

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

□ 「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체크리스트 (종합)

평가분야	평가항목	해당 여부	응답내용	첨부사항
준수	준수부담의 적정성	X	① 적정	해당없음
			② 높음	
	제재규정의 적정성	X	① 적당	해당없음
			② 약함	
			③ 강함	
	특혜발생 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
			② 있음	
집행	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	X	① 구체적·객관적	해당없음
			② 추상적·주관적	
	위탁·대행의 투명성·책임성	X	① 적정	해당없음
			② 부적정	
	재정누수 가능성	X	① 명확	해당없음
			② 불명확	
행정절차	접근의 용이성	X	① 있음	해당없음
			② 없음	
	공 개 성	X	① 예측가능	해당없음.
			② 예측곤란	
	예측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부패통제	이해충돌 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	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
4 해당부서 검토의견 (농업정책과)

검 토 의 견 서

□ 조례명 :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안)

실·과	주요내용(조항)	검 토 의 견
농업정책과	제9조(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·운영)	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 및 필요한 경비의 보조 근거를 마련한 조례개정(안)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9조(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·운영) 제3항
 -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에서 제외됨.

4. 작성자

- 농업정책과 지방농업주사보 박진우 (054-880-33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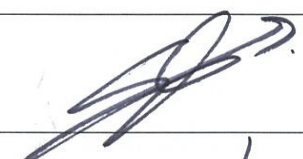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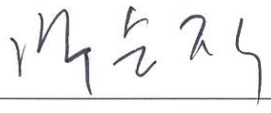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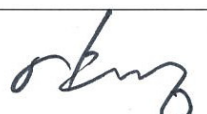
발의의원 서명부

(제명 :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)

성명	서명 및 날인	비고
남 영숙	남 영숙	
이 현우		
기 준영	기 준영	
신 훈광	신 훈광	
김 등환	김 등환	
이 세희		
박 비영	박 비영	
이 선희		
이 종영	이 종영	
정 씨현		
박 용선	박 용선	

발의의원 서명부

(제명 :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)

성명	서명 및 날인	비고
김 상 현		
조 현 일		
백 승 재		
김 영 선		
임 미 애		
박 창 석		
임 무 석		
안 희 영		
이 수 재		